**주식양수도계약서**

양도인 [\*](이하 ‘갑’이라 함)과 양수인 [\*](이하 ‘을’이라 함) 및 양수인 [\*](이하 ‘병’이라 함)은 다음과 같이 주식회사 프로슈머랩(이하 ‘본건 회사’라 함)의 보통주에 대한 주식 양수도 계약(이하 ‘본 계약’이라 함)을 체결한다

**제1조【목   적】**

본 계약은 갑이 보유하고 있는 본건 회사의 의결권 있는 보통주를 [\*]주를 을 및 병에게 양도함에 있어 필요한 권리 및 의무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체결한다.

**제2조【양수도 대상주식】**

본 계약에 따라 갑이 을 및 병에게 양도하는 주식은 본건 회사 발행의 기명식 보통주식 총 [\*]주(본건 회사 발행주식 총수 [\*]주 중 [\*]% 이하 ‘본건 주식’이라 함)로 한다.

**제3조【무상양도 및 면책의 특약】**

① 갑은 본건 주식 중 [\*]주를 을에게, [\*]주를 병에게 각 무상으로 양도하기로 한다.

② 을 및 병은 제1항에 의한 무상양도의 대가로 본건 회사가 본건 계약 체결일 현재 부담하고 있는 모든 부채에 대하여 갑을 면책시키기로 한다.

③ 을 및 병은 본건 계약체결일 이후 갑이 본건 회사가 부담하는 모든 부채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확인한다.

**제4조【양수도의 실행】**

을 및 병은 본 계약 체결일 이후 7일 이내에 본건 회사로 하여금 본건 주식의 명의개서 절차 등 양도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.

**제5조【세금 및 비용 부담】**

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세금 및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을 및 병이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한다.

**제6조【권리 및 책임】**

본 계약의 이행에 따라 을 및 병이 본건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완료하는 경우 본건 주식에 대한 모든 권리 및 책임은 을 및 병에게 이전한다.

**제7조【분쟁해결】**

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, 서울중앙지방법원을 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.

**제8조【비밀유지】**

당사자들은 본건 주식의 양수도와 관련하여 취득한 갑의 모든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, 업무수행상 필요하거나 법적으로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 이외에는 당사자들의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한다.

   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3통을 작성하고, 갑, 을 및 병이 각 1통씩 보관한다.

2019. 11. [\*].

갑 : 양도인       (인)

주  소

을 : 양수인         (인)

주 소

병 : 양수인         (인)

주 소